

新 정 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법인은 동아대학교 동문회 장학사업을 실시하여 모교 발전에 기여하며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교육 문화의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동아대학교 동문장학회”라 칭한다.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 3가 13-8번지 동아대학교 동문회 회관내에 둔다.

제 4 조 (사업)

- ① 이 법인은 제 1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
 1. 장학금 지급
 2. 학술연구비 및 해외 연수비 지급
 3. 회보의 발간 및 출판 홍보
 4. 기타 이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 ② 제 1 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 5 조 (수혜자)

- ① 이 법인이 제 4 조 제 1 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동아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대학원생 포함)에 한한다.

- ③ 수혜자의 추천규정은 다음을 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1. 전학기의 소정 교과목 학점을 전부 취득한자
 2. 전학기의 학업성적이 평점 3.5이상인 자
 3. 품행이 단정하고 학교생활이 모범인 자
 4. 모교 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
 5.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제 2 장 재산과 회계

제 6 조 (재산의 구분)

-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중 적립금
-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 7 조 (재산의 관리)

- ① 제 6 조 제 3 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하거나 담보의 제공의 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려고 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법인이 매수, 기부 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보존 및 기타 관리(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8 조 (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행한 재산은 재평가 기준으로 한다.

제 9 조 (경비의 조달방법)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 10 조 (회계의 구분)

-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 ② 제 1 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계리한다.
- ③ 제 2 항의 경우에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법이 정한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 11 조 (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 12 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13 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예산외의 채무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미만으로써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4 조 (임원의 보수제한등)

제 17 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 15 조 (재산사용 및 대여 금지)

이 법인의 재산은 제 3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하지 못한다. 다만 이 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기부자와 기부조건이 있을때와 이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제 3 장 임 원

제 16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13인
 2. 감사 2인
- ② 제 1 항 제 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 17 조 (상임이사)

- ① 제 4 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 ② 상임이사의 업무분담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 18 조 (임원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19 조 (임원의 선임방법)

-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 취임한다.
-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이사 또는 감사중에 결원이 생길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 ④ 제 1 항의 이사와 감사는 동아대학교 동문회 회원중에서 선임한다.

제 20 조 (임원 선임의 제한)

- ①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을 시행령 제 12 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 16 조의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 1 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 21 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취임한다.
- ② 전항의 이사장은 동아대학교 동문회 회장을 우선하여 선임한다.
- ③ 이사장의 임기는 동아대학교 동문회장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 22 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 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 23 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④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 대행자로 선출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24 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직무를 행한다.

- ①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②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③ 제 1 호 및 제 2 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 ④ 제 3 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⑤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 ⑥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 25 조 (자문에 응할 협의기구 설치)

- ① 이 법인의 발전을 위하여 동문회의 고문 및 장학위원으로서 자문에 응할 협의기구를 둘 수 있다.
- ② 제 1 항의 협의기구는 별도 내규로 정한다.

제 26 조 (사무국)

이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서 정한다.

제 4 장 이사회

제 27 조 (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 ①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②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③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④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⑤ 사업에 관한 사항
- ⑥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⑦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28 조 (의결 정족수)

-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 ② 이사회 의사는 재적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③ 이사회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 29 조 (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①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30 조 (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

제 31 조 (이사회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32 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 24 조 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 2 항에 의한 이사회 운영은 출석이사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 33 조 (서면결의금지)

이사회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5 장 보 칙

제 34 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5 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6 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 국가에 귀속한다.

제 37 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 38 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부산일보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결산공고
3. 기타 이사회에서 공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39 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주 소	임기
이사장	박영한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 740번지 자유APT 101-1021호	4년
상임이사	김소진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동 1405-31번지 삼익그린맨션3-1208호	2년
이사	김치곤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 3가 294번지	4년
이사	우병택	부산시 동구 초량3동 89-6번지	4년
이사	김희정	부산시 동래구 수안동 665-3번지	4년
이사	정해택	부산시 남구 광안1동 502-2번지	4년
이사	석춘재	부산시 동래구 구서2동 185-1번지 선경APT 3-1208호	4년
이사	김상현	부산시 남구 대연동 639-25번지	2년
이사	강병중	부산시 동구 초량3동 701번지	2년
이사	정종현	부산시 서구 동대신동 3가 13-83번지	2년
이사	강향희	부산시 서구 동대신동 2가 20번지	2년
이사	박상국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2동 156-18번지	2년
이사	김영희	부산시 사하구 괴정2동 192-3번지	2년
감사	박필룡	경남 양산군 양산읍 북부동 488-2번지	2년
감사	박병규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 3가 133번지	1년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1988. 6. 2. 제정
2000. 3.25. 1차 개정
2001. 6. 5. 2차 개정
2004.10.28. 3차 개정
2008. 3.17. 5차 개정
2010.11.11. 6차 개정
2012.10.31. 7차 개정
2014. 3. 3. 8차 개정

[별지 1]

설립당초의 기본재산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1988년 6월 2 일 설립)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	비 고
동산(현금)		100,000,000원	반도투자금융(CMA)
합계		100,000,000원	

※ 재산은 동산과 부동산으로 대분류 후 다시 세분하여 표시할 것.

2. 기본재산 세부목록표

재 산 명	종별 (소재지, 지번, 지목)	수 량 (지적)	단 가	평가액	비 고
동산(현금)	반도투자금융		43,000,000원	43,000,000원	박영한
동산(현금)	"		2,000,000원	2,000,000원	이정기
동산(현금)	"		2,000,000원	2,000,000원	최찬택
동산(현금)	"		7,000,000원	7,000,000원	김치곤
동산(현금)	"		5,000,000원	5,000,000원	우병택
동산(현금)	"		2,000,000원	2,000,000원	김만수
동산(현금)	"		2,000,000원	2,000,000원	박병규
동산(현금)	"		7,000,000원	7,000,000원	정중현
동산(현금)	"		2,000,000원	2,000,000원	천완배
동산(현금)	"		2,000,000원	2,000,000원	김신재
동산(현금)	"		10,000,000원	10,000,000원	강병중
동산(현금)	"		7,000,000원	7,000,000원	강향희
동산(현금)	"		7,000,000원	7,000,000원	정주영
동산(현금)	"		2,000,000원	2,000,000원	방홍석
합계			100,000,000원	100,000,000원	14명

[별지 2]

(구) 기본재산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2014년 2월 17일)

현재)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	비 고
동산(현금)		1,286,400,000원	
합계		1,286,400,000원	

※ 재산은 동산과 부동산으로 대분류 후 다시 세분하여 표시할 것.

2. 기본재산 세부목록표

재 산 명	종별 (소재지, 지번, 지목)	수 량 (지적)	단 가	평가액	비 고
동산(현금)	부산은행		360,000,000원	360,000,000원	정기예금
동산(현금)	부산은행		253,000,000원	253,000,000원	정기예금
동산(현금)	부산은행		243,000,000원	243,000,000원	정기예금
동산(현금)	부산은행		11,400,000원	11,400,000원	정기예금
동산(현금)	부산은행		34,000,000원	34,000,000원	정기예금
동산(현금)	농협		385,000,000	385,000,000	정기예금
합계			1,286,400,000원	1,286,400,000원	

